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성과계약서

2025. 7.

관 악 구

제1장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악구청장과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관악문화재단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계약서에 각각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②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단, 제8조(경영목표), 제10조(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제13조(기본연봉), 제14조(성과연봉)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기간 중 매년 1회 갱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경영총괄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법률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관악문화재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대표이사는 법률, 조례, 정관과 제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8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공립한 직무수행) ① 대표이사는 재임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중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 대표이사는 재단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표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알게 된 재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재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의원면직 제한) 구청장은 대표이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제8조(경영목표) ① 대표이사가 계약기간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3. 경영목표와 같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 대표이사는 제8조의 경영목표에 대하여 매년

당해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① 대표이사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경영성과평가”라 한다)는 구청장이 실시하며, 경영성과평가는 법률 제28조에 따른 기관 경영실적평가가 끝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② 제1항의 경영성과평가를 위한 목표별 평가기준은 【별표】 4. 경영목표 평가기준과 같다.

제11조(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① 제10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경영성과평가와 법률 제28조에 따른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고, 그 기준은 【별표】 2. 경영평가 등급 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평가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른다

③ 평가 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재임한 경우의 성과 인센티브는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 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 조치는 재임 중인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12 조(보수체계) 대표이사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 조(기본연봉) ① 대표이사의 기본연봉은 구청장과 별도로 체결하는 연

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매월 기본연봉액의 12분의 1씩 재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대표이사의 기본연봉은 경영성과평가 및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은 【별표】 2. 경영평가 등급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년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 연봉조정이 확정된 당해 보수지급부터 분할 또는 일괄 정산한다.

④ 대표이사가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망,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성과연봉) ① 대표이사의 성과연봉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기본연봉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대표이사의 경영성과평가 및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 2. 경영평가 등급 기준에 따른다.

② 성과연봉 지급 시기는 성과연봉 지급률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지급한다.

③ 대표이사가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연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연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률 제9조, 제10조,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및 해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가급여) 대표의 임기 중 부가급여는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 대표이사에게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이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대표이사가 그 금액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대표이사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재단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복리후생 등) ① 재단은 대표이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 대표이사의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휴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재임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1년 미만 : 13일
2. 1년이상 2년 미만 : 14일
3. 2년이상(연임포함) : 15일

② 제1항에 규정된 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한다.

③ 제1항의 휴가를 미실시할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하지 아니 한다.

④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은 재단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기 타

제20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관악구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경영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도·조언, 권고한 경우

제21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대표이사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권리의 귀속) 대표이사가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23조(세금)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24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 1 조(경영목표 평가 시기) 제10조에 따른 경영성과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1회 평가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정관」에 따라 구청장과 대표이사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성과계약을 체결함.

2025년 7월

관 악 구 청 장 (인)
박 준 희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 (인)
대 표 이 사 소 홍 삼

【별 표】 대표이사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1부. 끝.

【별표】

대표이사 경영목표 및 평가기준

1. 인적사항

기관명	직위	성명	평가 기간	추진 업무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	소홍삼	2025.7.1.~2025.12.31.	관악문화재단 총괄

2. 경영평가 등급기준

평가등급	공통목표(80%) + 자율목표(20%)				
	가	나	다	라	마
합산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기본연봉률 조정률	5%	3%	1%	-1%	-3~-5%
성과연봉률 지급률	201~300%	151~200%	100~150%	0%	0%

3. 경영목표

구분	평가기준	평가기간	합계
공통 목표 (80%)	A. 책임경영	2025.7.1 ~ 2025.12.31.	80
	1.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80
자율 목표 (20%)	B. 기관 인지도 제고 노력		10
	1. 문화재단 홍보 활성화 노력		5
	2. 기관 역량증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5
	C. 기관장 주도의 역점사업 추진		10
	1. 외부재원 유치		5
	2.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구정 기여도 강화		5
합 계			100

4. 경영목표 평가기준 (기관경영실적평가 80 + 경영성과평가 20)

평가기준		합계	
		비계량	계량
A. 책임경영		80	
		-	80
	1.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리더십·경영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산술반영)	-	80
B. 기관 인지도 제고 노력		10	
		5	5
	1. 문화재단 홍보 활성화 노력	5	-
	2. 기관 역량증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5
C. 기관장 주도의 역점사업 추진		10	
		5	5
	1. 외부재원 유치	5	-
	2.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구정 기여도 강화	-	5
합 계		100	
		10	90

5. 경영목표 세부 평가기준

A 책임경영

지표명	1.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점수) 환산 적용 (80점)
-----	---------------------------------

B 기관인지도 제고 노력

지표명	1. 문화재단 홍보 활성화 노력 (5점)					
평가점수	정성(5점)	평가방법	등급별 정성평가			
평가내용	재단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은 적절한가?					
평가기준	1) 홍보활동의 적정성 및 효과성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재단 홍보 활동의 적정성 및 효과성	5점	4점	3점	2점	1점
증빙자료	- 계획서, 언론보도자료, SNS홍보실적 등 재단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내용 - 조회수·좋아요·팔로워 수 등 통계자료 등					

지표명	2. 기관 역량증진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5점)					
평가점수	정량(5점)	평가방법	단계별 평가			
평가내용	기관장의 기관 역량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성과					
평가기준	1)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노력과 성과					
	구 분	A등급 (5점)	B등급 (4점)	C등급 (3점)	D등급 (2점)	E등급 (1점)
	협력네트워크 구축 실적	10건이상	8건	6건	4건	4건미만
	※ 성과(예시) : 문화도시주민거버넌스 구축, 기관 및 단체 간 MOU, 공동사업추진 실적 등					
증빙자료	- 계획서, 결과보고서, 대내외 협력실적 등 관련 활동 수행 실적 자료 - 관악구 문화도시조성계획서 등 관련 활동 수행 실적 자료					

☐ 기관장 주도의 역점사업 추진

지표명	1. 외부재원 유치 (5점)					
평가점수	정성(5점)	평가방법	등급별 정성평가			
평가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유치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평가기준	1) 외부재원 유치 노력 및 성과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외부재원 유치 노력 및 성과의 적절성(a)	3점	2.4점	1.8점	1.2점	0.4점
	외부재원 유치를 통한 구정 기여도(b)	2점	1.6점	1.2점	0.8점	0.6점
증빙자료	- 관련공문(접수문서), 공모사업 결과보고, 기부금 약정서 및 이체내역 등					

지표명	2.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구정 기여도 강화 (5점)					
평가점수	정량(5점)	평가방법	단계별 평가			
평가내용	기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임기 중 발굴한 기관의 신규사업 발굴 성과					
평가기준	1) 신규사업 발굴 노력 및 성과 (비계량 5점) -예술창작활동과 연계한 문화향유 대표 지원사업 신규 발굴 건수					
	구 분	A등급 (5점)	B등급 (4점)	C등급 (3점)	D등급 (2점)	E등급 (1점)
	신규사업 발굴 실적	4건이상	3건	2건	1건	미추진
증빙자료	-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 활동 수행 실적 자료					